

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(안)심사보고서

(의안번호 제39호)

‘96. 2. 7.

총무재무위원회
위 원 장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‘96. 1. 29 서초구청장
나. 위원회 회부일자 : ‘96. 2. 3
다. 상 정 일 자 : ‘96. 2. 7
라. 위원회 개최 : 제49회 임시회개회중 총무재무위원회 제3차 회의
원안가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(제안설명자 : 총무국장 박우원)

가. 제안이유

- 공무원복무규정개정(대통령령 제14825호, 1995. 12. 14)에 따라 공직사회의 도덕성·윤리성 고양을 위한 경로효친휴가 부여 및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거나 20년이상 장기근속한 공무운에 대한 특별휴가제를 실시하는 등 공무원 휴가제도를 개선하고 현행 규정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복무관리의 효율성을 도모코자 함.

나. 주요골자

- 행정기관의 장은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에 대비하기 위한 훈련이 실시되는 경우 근무상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함. (안 제7조)

- 효친휴가의 원활한 실시를 위해 공무원 근속기간별 연가를 확대 조정함.
(안 제18조)
-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.
(안 제20조 제1항)
- 공무원건강진단 및 국외훈련을 위한 외국어능력시험에 응시할 때에는 공가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함. (안 제23조)
-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공무원에 대하여 6일이내의 휴가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함. (안 제24조 제5항제5호)
- 20년이상 장기근속한 공무원에 대하여 10일간의 장기근속휴가를 허가 할 수 있도록 함 (안 제24조 제5항)

다. 참고사항

1) 관계법령 : 공무원복무규정 (대통령령)

지방공무원법제59조 (위임규정)

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대통령령이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2) 예산조치 : 연가보상비 증액예상액 '96 제1차 추경예산에 반영 예정

3) 합의 : 내무부 지공 12100-490 ('95. 12. 23)호 및 서울시 인사 12100-4 ('96. 1. 3)호로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표준안 시달됨.

4) 기타 : 필요없음.

3.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

(보고자 : 전문위원 임 층 빙)

가. 검토내용

-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공무원휴가제도를 개선하고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조례개정안임.

나. 검토결과

- 공무원 복무규정(대통령령 제 14,825호 : '95. 12. 14)개정에 따라 경로 효친휴가 부여등 공무원 사기앙양을 위한 휴가제도 개선과 일부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은 타당함.

c. 연가일수증가에 따른 연가보상비는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여야 할 것임.

다. 관련법규 : (생략)

4. 질의 및 답변요지

- 사기양양을 위한 휴가제도라고 하였는데 제도를 제대로 시행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→현재는 4계절 휴가를 실시하므로 특정업무 (방역, 수방등)를 제외하고는 제때에, 자기가 원하는 때 휴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철저히 이행 되도록 하겠음.
- 연가일수 증가에 따른 연가보상비의 조치는 →제안설명에서와 같이 추가 소요액은 추경에 반영할 예정이며 기정예산에 2억 9천만원이 확보되어 있으며 15일에서 20일로 연장되어 5일분 약 2억9천만원을 추경에 편성할 것임. 예년에 보면 평균 7.5일 정도 연가 보상비가 지급되고 있음.
- 20년이상 근속자는 장기휴가를 줄 수 있는데 →20년 도래시 1회10일로 휴가할 수 있으며 연가보상비는 15일에서 20일까지 지급할 수 있으며 휴가비는 지급치 않음.
- 20년이상 근속자는 20일외 10일을 더 주는가 →3년이내에 조정하여 10일간을 휴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1인 1회에 실시하는 것임.
- 제23조의 공가의 범위에 견학이나 세미나 참석시도 포함되는가 →예시된 7개항에 한하고 이는 공가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며 장기간은 교육파견의 명령을 받아서 참석 하여야 함.
- 공무원이 자격시험등 응시할때는 →승진, 전직시험에 한 해 공가처리 함.
- 제21조와 제22조가 상충된다고 보는데 →종래는 삽입하였으나 개정안에는 공제하는 것이며 질병이나 부상으로 지참또는 조퇴시는 응징하고자 하는 것임.
- 토요전일근무제 실시 계획은 → 지적과, 여권과 시민봉사실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더 검토후 실시여부를 결정하겠음.
- 연가일수 20일에서 23일로 증가한 이유는 →6년이상자에게만 연장하여 사기 진작을 하고자 하는 것임.
- 개정조례 표준안의 내용은 →표준안과 같으며 그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 하겠음.
- 연가실시계획서 →월별로 실시하여야 개인별의사를 존중하여 실시하기 위함.

- 병가 180일 경과시는 → 휴직처리하고 있음.
- 부칙에서 1월1일부터 소급적용하는 이유 → '95. 12. 14 복무령이 개정되고 서울특별시에서 '96. 1. 5 시달 되었으므로 지난해 정기회 제출치 못하였음.
- 연가보상비의 편성근거는 → 연가보상비 책정은 월봉급에서 1/24를 곱하여 7.5일 기준해서 편성한 것임. 평균 통계치를 근거한 것임.
- 제24조 제6항의 별정직의 휴가는 → 별정직은 퇴직전 3개월 부터 특별휴가를 실시하고 있음.

5. 토론자 및 토론요지 : 없음

6. 수정안의 요지 : 없음

7. 심사결과

원안가결 (만장일치)

8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
9. 기타 필요한 사항

- 가. 예산조치 : 연가보상비는 추가경정예산에 반영
- 나. 연석회의, 공청회등

10. 체계자구 정리내용 : 없음